

건축사법 시행령중 개정령

대통령령 제9652호

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
국무총리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
에 공포한다.

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

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
건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
성하거나 서울특별시장·부산시장·도지사(이하 “도지
사”라 한다)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
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
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.

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
계도서가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
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작성한 기관의 장과
협의하여 폐지할 수 있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을 삭제
한다.

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제
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,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 및
실기시험으로 실시하며,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
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 (시험과목등)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제1차시험과목 | 2. 제2차시험과목 |
| 가. 건축구조 | 가. 건축계획 |
| 나. 건축시공 | 나. 건축설계 |
| 다. 건축법규 | |

②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
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부 장관
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
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 이외
의 과목 및 제2차시험과목중 건축설계 이외의 과목
을 면제한다.

제10조중 “건축설계과목은 200점”을 삭제한다.

제2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중
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가 포함된 합동사무소(중
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를 제외한 건축사의 수가
2인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)는 제2호 및 제3호의 임
무를 행할 수 없다.

제35조 제1항 본문중 “법 제35조”를 법 제5조”로 하
고,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한다.

3. 법 제23조·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
사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
권한

4.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
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

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
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
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
다.

대통령령 제9,183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중
“60일내” 및 동 부칙 제3항중 “30일내”를 각각 “2년내”
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중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) 법률 제
3,074호 건축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2급건축사
로서 법 제14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건축사자격 시험에
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
1차시험을 면제한다.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혈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
에 공포한다.